2022년 1월 1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월 12일(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하고판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이준희 과장(044-204-7890), 장수환 사무관(7893)

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17부터 접수 -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 통해 신청 -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에 두	쿠알(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 방역물품	구매 비용	· 최대 10만	워 지급	<u></u>	

접수 초기 체제(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를	는 실시할 예정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가능한	1차 지급	· 대상자들은	은 안내 문자
수신 후 신청가능 하며(1.17~2.6),	확인이 여	어려운 소기	업·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지급	기간을 윤	P영할 계획	$(2.14 \sim 2.2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17일(월)부터 소기업·소상 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6일(월)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 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 1차 지급(1.17~2.6) :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작년 12월 3일(금)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서 온라인 체제(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월 17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1월 17일(월)부터 1월 26일(수)까지는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이후 1월 27일(목)부터 2월 6일(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2 2차 지급(2.14 ~ 2.25) :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이들은 2월 14일(월)부터 2월 25일(금)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 중기부 데이터베이스(DB)에 관련 자료가 없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 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작년 12월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방역물품지원금 받으시고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장수환 사무관(☎ 044-204-78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시행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000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시행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방역물품 지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지원 대상임

2. 지원금액

-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 번호별로 모두 신청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① 1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1.17(월) ~ '22.2.6(일)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http://서울방역물품.kr 로 신청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②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4. 유의사항

-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 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인 업체는 1.21일 신청
-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통합위임장

①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휴대폰	E번호			
* 해당하는 사유에 □ E	공동대표(법인 포힏 타인 계좌 수령(본 가족 대리 신청 등	인 또는 법	미성년자 인계좌 수령	병 불가 시))	
② 권한을 위임	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의	라의 관계	□ 가족	· □ 직원 □	기타()
주민등록번호		휴대	폰번호				
주소		·					
③ 위임내용							
'방역활동비 지원 임받는 자에게 위약			당자금 선	<u> </u> 신청과 수			
2021년 월 일							
	의인	하느 자(약	g 대표자	١.	2021		_
□ 개인정보의 수집	위임 입·이용에 관한 <i>/</i>	하는 자(원 사항	원 대표자 <u>)</u>):	2021	간 절 (서명 또는	_
□ 개인정보의 수접 수집 및 이용 목적		사항	<mark>집 항 목</mark>):	2021		- = (인) 및
수집 및 이용	집·이용에 관한 /	사항 수 업체명(법인 록번호, 휴I 주민등록반	<mark>집 항 목</mark> 명), 주민등 대폰번호, 유	등록번호(t 위임 사유,	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통	 (서명 또는 보유	- = (인) 및 간 .제공
수집 및 이용 목적 방역활동비 지원금 관련 업무	집·이용에 관한 / ○본인:성명, 입 주소, 사업자등 장 사본 등 ○대리인: 성명,	사항 수 업체명(법인 로번호, 휴I 주민등록반 통장 사본	<mark>집 항 목</mark> 명), 주민등 대폰번호, 유	등록번호(t 위임 사유, :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통 노, 위임자와의	보유 이용기 해당정보 동의일로 5년	는 (인) 및 간 제공 부터 않음)
수집 및 이용 목적 방역활동비 지원금 관련 업무	입·이용에 관한 / ○본인:성명, 입 주소, 사업자등 장 사본 등 ○대리인:성명, 관계 계좌번호,	사항 수 업체명(법인 로번호, 휴I 주민등록반 통장 사본	<mark>집 항 목</mark> 명), 주민등 대폰번호, 유 1호, 휴대폰등	등록번호(† 위임 사유, :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통 노, 위임자와의	보유 이용기 해당정보 동의일로 5년	- = (인) 및 간 제공 부터 않음)
수집 및 이용 목적 방역활동비 지원금 관련 업무 ☞ 위 내용을 확 ※ '방역활동비 지원 간 발생 가능한	입·이용에 관한 / ○본인:성명, 입 주소, 사업자등 장 사본 등 ○대리인: 성명, 관계 계좌번호, 확인하고 동의하여 대표자	사항 수 업체명(법인 복번호, 휴대 주민등록반통장 사본 심니까? •로부터 우 이해 당시하게적으로	집 항 목명), 주민성 대폰번호, 유 보호, 휴대폰 등 기임받는 기 하결해야 함	등록번호(변임 사유, 반번호, 주소 (C 자 : 표자, 미선하며, 자체	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통 , 위임자와의 3 동의함 □ 2021년 성년자, 타인	보유 (서명 또는 보유 이용기 해당정보 5년 동의하지 권 월 (서명 또는 계좌 수령	는 (인) 지공부터 않음) 일 다 (인) 자 등)

참고 1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고 게 I O 년 년 /
1. 식료품 제조업	C10	- 기리 기 기 다
1. <u>기파당 제조합</u> 2. 음료 제조업	C10	_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
<u>3. 기기, 기기기에서의 첫 조취세점 세조합</u>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_
	C19	_
5. 조크트, 단단 옷 국표하세요 제조합 6. 하하무진 및 하하제푸 제조언(이얀푸 제조언은 제이)	C20	_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1	_
│	C23	-
0. <u>기타</u> 0. 1차 근소 제조언	C24	- 120억원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이하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_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13. 그 뉴피 기계 및 8세 세조법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15. 사용자 및 크레필디 제고합 15. 가구 제조업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10. 건기, 기 <u></u> , 8기 옷 8기고를 8합합 17. 수도업	E36	-
17. 구조합 19. 노어 이어 미 에어	A	
18. 농업, 임업 및 어업 19. 광업	В	-
20. 담배 제조업	C12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2	_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
22 교교 조이 미 조이대표 대표어	C17	-
23. 월프, 중이 및 중이제품 제조합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18	80억원
24. 단체 중 기급에게 급세납 25. 고므제푸 및 플라스티제푸 제조언	C22	이하
26 이료 정민 관하기가 및 시계 제조언	C27	
<u>20. 의표, 항원, 항국기가 못 자개 제조합</u> 27 기 반이 오소자비 제조언	C31	-
28 그 반이 제푸 제조언	C33	-
29. 건설업	F	-
30 우수 및 창고언	H	-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K	-
<u> 31. 다양 첫 조립을</u>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33. 정보통신업	ı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ا ماما
35. 부동산업	L	
35. 구등인답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30억원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9. 선립등 기계 옷 3의 구의법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0. 국칙 및 음식임입 41.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41. 교육 시미드립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이하
42. 모인접 및 사외독시 시미스립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u> 43. 〒미(廖廷) 犬 시탁 세한 시박그림</u>	ا 3	

참고 2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구분	정의 및 세부 기준	관련 부서
1	유흥시설 등	·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 주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식 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 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 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 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2	노래(코인) 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 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3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중 실내* 시설*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구조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4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 장, 경정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5	경륜·경정·경마장	·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카지노(내국인)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 지노영업장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6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식품위생법」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식품의약품안전 처 (식품관리 총괄과)
7	학원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 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 래교실 포함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 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구분	정의 및 세부 기준	관련 부서
8	영화관·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 「공연법」제2조(정의)에 따른 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 영상과)
9	독서실·스터디카 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 실태 우선)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10	멀티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11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12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영업실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13	박물관·미술관·과 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따른 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14	파티룸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15	도서관	- 「도서관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 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 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16	마사지업소 · 안마소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1 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참고 3

시·군·구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중구	일자리경제과	051-600-4514
	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475
	동구	일자리경제과	051-440-4471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051-419-4476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051-605-4485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16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471
부산	북구	일자리경제과	051-309-4481
T건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051-749-4475
	사하구	경제진흥과	051-220-4476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051-519-4806
	강서구	지역경제과	051-970-4475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4546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47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474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472
	중구	일자리경제과	053-661-2647
	동구	경제정책과	053-662-2662
	서구	경제과	053-663-2653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654
대구	북구	민생경제과	053-665-2657
	수성구	일자리경제과	053-666-4311
	달서구	경제지원과	053-667-2654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2646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2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3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98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822
인천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8
בע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67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4
	서구	경제정책과	032-560-3385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2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514
	동구	일자리경제과	062-608-2703
	서구	경제과	062-360-7363
광주	남구	지역경제과	062-607-2713
	북구	민생경제과	062-410-6109
	광산구	기업경제과	062-960-8428
	동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80
	중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80
대전	서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80
	유성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80
	대덕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80
	중구	경제진흥과	052-290-3312
울산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052-226-3152
출언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23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052-241-7702
세종		기업지원과	044-300-4133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42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5145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563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384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031-550-2599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78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228-2678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오산시	지역경제과	031-8036-7554
	안산시	경제일자리과	031-481-2684,2695
	화성시	소상공인과	031-5189-7220
	양주시	기업경제과	031-8082-6031
	용인시	지역경제과	031-324-3844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473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546
경기도	성남시	상권지원과	031-729-8974
	광명시	기업지원과	02-2680-6326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031-8024-3541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3065
	시흥시	소상공인과	031-310-2279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3197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189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790-6876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22
	군포시	지역경제과	031-390-0281
	의왕시	기업지원과	031-345-2354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09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031-590-8220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031-580-4889
	부천시	생활경제과	032-625-2728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031-828-2914,2915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420
	원주시	경제진흥과	033-737-2912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212
	동해시	경제과	033-539-8002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3896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52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0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05
7 l Ol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55
강원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653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70-8828-1880
	정선군	경제과	033-560-244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517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1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033-480-7122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1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377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57
	청주시	경제정책과	043-201-1042
	충주시	경제기업과	043-850-6015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05
	보은군	경제전략과	043-540-3234
	옥천군	경제과	043-730-3362
충북	영동군	경제과	043-740-3713
	증평군	경제과	043-835-4014
	진천군	경제과	043-539-3335
	괴산군	경제과	043-830-3294
	음성군	경제과	043-871-3616
	단양군	지역경제과	043-420-2404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5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642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공주시	경제과	041-840-8339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850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3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충남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0
	홍성군	경제과	041-630-161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746-6012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041-350-4017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267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063-280-2373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063-454-2680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063-859-5218
	정읍시	지역경제과	063-539-5604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42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978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063-290-2434
전북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2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56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063-350-2183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07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6
	고창군	상생경제과	063-560-2351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	063-580-4116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남	목포시	지역경제과	061-270-8459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3617
	순천시	지역경제과	061-749-5736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61-339-8326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3351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061-380-3043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712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256
	고흥군	경제유통과	061-830-5353
	보성군	경제산업과	061-850-5493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061-379-3162
	장흥군	지역경제과	061-860-5912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061-430-3065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353
	영암군	투자경제과	061-470-2483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14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061-320-1733
	영광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
	장성군	경제교통과	061-390-7352
	완도군	경제교통과	061-550-5553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061-540-6404
	신안군	경제유통과	061-240-6295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270-2413
	경주시	경제정책과	054-760-2021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054-420-6709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054-840-5306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32
경북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 639 6104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231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02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484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15
	군위군	경제과	054-380-6629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233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054-680-6322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33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3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62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70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22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853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771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790-6272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경남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055-225-3394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63
	통영시	지역경제과	055-650-5232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68
	김해시	지역경제과	055-330-3413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53
	거제시	생활경제과	055-639-4113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734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055-570-3124
	함안군	경제기업과	055-580-2693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684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055-670-2304
	남해군	지역활성과	055-860-3193
	하동군	경제전략과	055-880-2194
	산청군	경제교통과	055-970-6805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14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682
	합천군	경제교통과	055-930-3354
제주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79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4